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239회 제2차 정례회>

2015. 12. 9.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정원희·임동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지방재정 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

- □ 재정 절용 및 투명한 공개로 건전재정 운영,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행복한 복지·문화, 창조경제 구현 및 미래 전략적 투자로 성 장기반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 □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입 예측 가능한 세입추계를 최대한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민 수혜적 균형재정으로 편성하고, 투자 사업은 계획적 군정 발전을 위해 분야별 사업의 시급성과 추진능력을 감안하여 예산을 반영함.

4. 예산총괄

1) 예산총액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구성비(%)	비고
총계	540,000	100.00	
일 반 회 계	524,500	97.13	
특 별 회 계	15,500	2.87	
기 타 특 별 회 계	15,500	2.87	
의료급여기금	441	0.08	
폐기물처리시설사업	7,400	1.37	
기 반 시 설	111	0.02	
농 공 지 구 관 리	241	0.04	
치 수 사 업	7,307	1.35	

2)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장 관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총 계	540,000	477,000	63,000	13.21
	합 계	524,500	461,800	62,700	13.58
	지 방 세 수입	114,338	100,441	13,897	13.84
	세 외 수 입	26,155	22,576	3,579	15.86
	경상적 세외수입	18,998	17,132	1,866	10.89
일 ₁₁	임시적 세외수입	7,157	5,444	1,713	31.49
반 회	지 방 교 부세	103,000	103,000	0	0.00
꾸 계	조정교부금등	20,250	20,250	0	0.00
	보 조 금	177,215	171,087	6,128	3.58
	국고 보조금 등	117,823	114,915	2,908	2.53
	시·도비보조금등	59,392	56,172	3,220	5.7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3,542	44,446	39,096	87.96
	합 계	15,500	15,200	300	1.97
	세외수입	239	255	△16	△6.19
 특	경상적세외수입	217	252	△35	△13.72
· 별	임시적세외수입	22	3	19	554.93
회	보 조 금	351	326	25	7.60
계	국고보조금등	281	261	20	7.59
	시·도비보조금등	70	65	5	7.6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910	14,619	291	1.99

3)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

■기능별

(단위: 백만원)

구분	분야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540,000	477,000	63,000	13.21
	계	524,500	461,800	62,700	13.58
	일반 공공행정	31,245	20,417	10,828	53.04
	공공질서및안전	7,805	10,341	$\triangle 2,536$	$\triangle 24.52$
	교 육	6,975	6,541	434	6.62
일	문 화 및 관광	35,960	21,742	14,218	65.39
	환경 보호	11,410	9,780	1,630	16.67
반	사 회 복 지	157,355	143,942	13,413	9.32
	보 건	10,185	10,503	$\triangle 318$	△3.03
회	농림해양수산	39,310	41,867	$\triangle 2,557$	△6.11
	산업·중소기업	2,303	745	1,558	208.87
계	수송 및 교 통	93,474	69,725	23,749	34.06
	국토및지역개발	59,768	40,709	19,059	46.82
	과 학 기 술	0	140	△140	순감
	예 비 비	1,955	12,091	\triangle 10,136	△83.83
	기 타	66,755	73,257	$\triangle 6,502$	△8.87
_	계	15,500	15,200	300	1.97
특 _대	환 경 보호	7,400	7,300	100	1.37
별 회	사 회 복지	351	326	25	7.60
최 계	국토및지역개발	7,376	7,247	129	1.79
	기 타	373	327	46	13.95

■ 성 질 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540,000	477,000	63,000	13.21
	계	524,500	461,800	62,700	13.58
	인 건 비	59,909	55,061	4,848	8.81
	물 건 비	31,362	27,956	3,406	12.18
	일반운영비	22,275	19,495	2,780	14.26
	여 비	2,566	2,484	82	3.29
	업무추진비	646	643	3	0.37
	직무 수행 경비	1,851	1,816	35	1.96
	의 회 비	411	411	0	0.02
	재 료 비	2,108	1,812	296	16.37
	연구개발비	1,505	1,295	210	16.15
	경 상 이 전	226,066	203,269	22,797	11.22
	자 본 지 출	204,014	162,268	41,746	25.73
	시설비및부대비	182,072	137,726	44,346	32.20
	민간 자본 이전	14,732	18,436	△3,704	△20.09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996	1,925	71	3.72
	공사공단자본전출금	836	356	480	134.72
	자 산 취 득 비	4,378	3,825	553	14.44
	융자 및 출자	10	0	10	순증
	보 전 재 원	0	290	△290	순감
	내 부 거 래	1,175	855	320	37.41
	예비비 및 기타	1,964	12,101	△10,137	$\triangle 83.77$
트	계	15,500	15,200	300	1.97
<u>특</u>	인 건 비	345	317	28	8.91
별	물 건 비	212	213	$\triangle 1$	$\triangle 0.47$
회	경 상 이 전	286	262	24	9.13
 계	자 본 지 출	1,623	267	1,356	507.87
	예비비 및 기타	13,034	14,141	△1,107	△7.83

5. 주요내용

■ 예산규모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4,770억원 보다 630억원(13.21%증)이 늘어난 5,400억원으로
-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4,618억원 보다 627억원이 증가된 **5,245억** 워이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 152억원 보다 3억원이 증가된 **155억원입니다**.

■ 세입예산

- □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에 있어
 - 자체수입 지방세 1,143억원으로 21.80%이며,
 세외수입 261억원으로서 4.99%이고,
 지방교부세 1,030억원으로 19.64%,
 조정교부금등 202억원으로 3.86%,
 보조금은 1,77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3.7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35억원으로 15.9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주민세는 전년대비 7억 8천원이 늘어난 72억원 재산세는 전년대비 39억 늘어난 308억원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24억이 늘어난 307억원 담배소비세 증감없이 100억원 지방소득세 339억원, 지난년도수입 17억 등총 139억원의 지방세가 증가되어 1,14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35억 7천여원이 증가된 261억원이 편성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 7억 4천만원, 사용료 수입이 30억 4천만원, 수수료수입이 40억 4천만원, 사업수입 44억 8천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3억 9천만만원, 이자수입이 33억원이며, 총 189억 9천여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71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증감없이 1,03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 조정교부금등은 증감없이 202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1,178억 2천여만원, 시·도비보조금등 593억 9천여만원이 늘어난 총 1,772억 1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835억 4천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로 4,577억 4,464만원, 재무활동비로 11억 8,463만원, 행정운영경비로 655억 7,07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분야별로는

-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3.04% 증가한 312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4.52% 감소한 78억원
- 교육분야에 6.62% 증가된 69억원
- 문화 및 관광분야에 65.39%가 증가된 359억원
- 환경보호분야에 16.67% 증가한 114억원
- 사회복지분야에 9.32% 증가된 1,573억원
- 보건분야에 3.03% 감소된 102억원

- 농림해양 수산분야에 6.11%가 감소된 393억원
-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08.87% 증가된 23억원
- 수송 및 교통분야에 34.06% 증가된 935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6.82% 증가한 598억원
- 예비비로 19억여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타 667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에서는

인건비는 보수 396억여워. 기타직보수 13억여워.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3억원, 기간제근로자보수 107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8.81% 증가된 599억여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14.26% 증가와, 재료비 16.37% 증가와 연구개발비 16.15% 증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이 소폭 증가하여 34억여원이 증가한 313억여원 편성되었으며,

경상이전 경비는 2015년대비 228억여원이 늘어난 2,261억여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32.20%들어난 1,821억여원이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9억여원이 편성되었고, 공사공단자본전출금 8억 4천여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 43억 8천여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자본이전은 37억원 감소되여 전년도와 비교하면 20.09%감소한 147억여원을 편성하였음.

내부거래는 각각 3억여만원 증가하여 11억 7천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01억여원 감소하여 19억 6천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 (자체사업)

부 서 명	사 업 명	전년도	예산액	<u> 1위 · 선원)</u> 비고
기획감사실	마을공동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200,000	200,000	p118
자치행정과	석가탄신일 및 크리스마스 장식물 설치	10,800	12,600	p135
	시설전환 리모델링 사업		639,069	p138
	방범용 CCTV설치	210,000	300,000	p140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활성탄 교체 및 수지부활	12,000	13,500	p143
회 계 과	청사시설물 긴급보수비	99,509	139,312	p172
	군청창고와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 및 주차장 확장	506,082	85,000	p172
	군청사 주차장 확장		2,900,000	p173
토지정보과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20,000	13,800	p189
	상세주소 건물번호판 설치	3,000	3,000	p189
	벽면형 도로명판 등 설치	5,000	2,500	p189
	마비정 벽화마을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		3,000	p189
주민지원과	보훈회관 시설 유지보수비		5,000	p214
	현충 시설물 유지보수	10,000	5,000	p215
	충혼탑 및 충의문 정비 공사		21,000	p215
	전투기(F-4)전시		155,000	p215
	충혼당 건립 공사		139,500	p216
사회복지과	구지면 노인회관 게이트볼장 정비		80,000	p234
	경로당 환경정비	60,000	60,000	p234
	제2 노인복지관 건립		1,045,000	p236

부 서 명	사 업 명	전년도	예산액	<u> </u>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80,000	p237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		50,000	p256
	옥포어린이집 오수배관 및 진입로 공사		15,000	p263
	죽곡휴먼시아어린이집 기자재실 설치		8,000	p263
	구지어린이집 오수공사		7,000	p263
농업정책과	시니어 친환경 협업농장 (비닐하우스)조성	96,000	72,000	p282
	국도 개방형 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설치		180,000	p291
	비슬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계단타일 보수		7,000	p291
환 경 과	먹는물 공동시설 소독시설 설치		5,000	p310
	먹는물 공동시설 급수시설 설치		30,000	p310
	천연미네랄수 개발		30,000	p311
	방치공 원상복구		20,000	p311
	공중화장실 개보수	32,000	32,000	p311
청소위생과	쓰레기 집하장(수거함)설치 및 유지보수	100,000	100,000	p322
	먹거리마을 안내간판 등 수리	10,000	10,000	p325
	먹거리마을 안내간판 신규 설치		15,000	p325
건 설 과	화원 설화1리(87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800,000	p339
	화원 천내2리(농협주유소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900,000	p339
	화원 구라리(산47-2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800,000	p339
	화원 천내1리 마을회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650,000	p339
	화원 구라1리(중2-17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3,300,000	p339

부 서 명	사 업 명	전년도	예산액	위 : 전원) 비고
건 설 과	논공 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500,000	p340
	논공 금포1리 새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0	p340
	논공 삼리3리(국도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0	p341
	다사 매곡리 다사초등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1,300,000	p341
	다사 세천리 222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450,000	p341
	다사 서재리(보성~화진금봉아 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300,000	p342
	다사 서재리(595번지)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200,000	p343
	가창 단산리(샛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700,000	p343
	가창 옥분리(구진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0	p343
	가창 삼산~우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8,000,000	p344
	가창 냉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0	p344
	가창 삼산리(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0	p344
	하빈 대평2리(모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800,000	p346
	하빈면 소재지 우회 도시계획도로 개설		1,500,000	p346
	현풍 지리~오산리(군도18호선) 도로확포장		3,800,000	p347
	현풍 오산~원교간(군도1호선) 도로 선형 개량		837,000	p347
	옥포 교항~신당 경계 도시계획도로 개설		600,000	p348
	옥포 강림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600,000	p348
	옥포 강림리(보금자리주택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000	p349
	현풍 자모리(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700,000	p349

부 서 명	사 업 명	전년도	예산액	<u>:위 : 전원)</u> 비고
, , ,	구지 창2리(533번지선)	66		·
건 설 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550,000	p349
	구지 창리(어린이공원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750,000	p349
	구지 창리(창리초교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800,000	p350
	옥포 교항1리(교항2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700,000	p350
	옥포 본리1리(중앙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800,000	p350
	유가 가태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0	p350
	달성군청~옥포강림임대주택 단지간 도로건설		1,380,000	p351
	도로 긴급보수비		700,000	p356
	도로굴착복구		2,000,000	p356
	가창 내주리~중주리간 도로정비		900,000	p356
	화원 성산리 사문진로 인도정비		500,000	p358
	유가 유곡1교 재가설		550,000	p359
	유가 한정리 인도설치		500,000	p361
도 시 과	논공 본리(논공로91길) 우수관거 정비공사		300,000	p369
	하수도 긴급 보수		200,000	p370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300,000	p370
	하빈 동곡옥계농장-동곡 치안센터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0	p374
	하빈 하산2리(너울터) 농로 개설공사	80,000	170,000	p375
	옥포 김흥리(582번지선) 농로 포장공사	80,000	160,000	p377
	유가 음리 농로확포장공사	200,000	150,000	p379

부 서 명	사 업 명	전년도	예산액	위 : 전원) 비 고
도 시 과	구지 대암2리 간이양수장설치 및 용수관로 매설공사		200,000	p379
	농로 및 용수로 유지보수	300,000	300,000	p380
	미지급(미불)용지 보상	200,000	200,000	p380
	암반관정 개발공사		600,000	p381
	취약지구 보안등 설치(9개읍면)	317,696	320,000	p382
	논공 구마고속도로진입로-달성터 널 가로등 설치공사		256,500	p382
	논공 공단출장소-동아제약 가로등 설치공사		234,000	p382
	현풍 상리교-현풍3교 가로등 교체공사		258,000	p383
	노후 보안등 보수(폴형, 취부형)	290,000	290,000	p383
	절전형(LED)보안등 교체공사		1,500,000	p383
	동곡배수장 외 1개소 제진기 설치공사		1,413000	p384
	하리배수장 외 1개소 수·배전반 제작구입설치		300,000	p384
안전방재과	재해위험시설 긴급보수비(읍면)	200,000	400,000	p389
	자연재난 상황 감시용 CCTV 설치		120,000	p391
	수문정비 및 보수	200,000	200,000	p395
	환경정비	400,000	400,000	p395
	하천제방응급복구비	150,000	150,000	p395
	하천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비	350,000	350,000	p395
	낙동강변 다목적도로 건설사업		3,000,000	p398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500,000	p398
	옥포 김흥리 만수소하천 정비		200,000	p400
	구지 오설리 오설소하천 상류 정비		500,000	p401

부 서 명	사 업 명	전년도	예산액	<u> 비 고</u>
건 축 과	빛이 아름다운 테크노폴리스로 조성사업		300,000	p409
	사문진 보부상 조형물 제작 및 설 치		100,000	p410
교 통 과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110,000	110,000	p415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단가계약)	180,000	200,000	p419
	차선 및 횡단보도 정비 (단가계약)	180,000	280,000	p419
	교통시설물 긴급복구	80,000	200,000	p419
	화원 명곡지구 노상주차장 설치		200,000	p420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물 설치 (CCTV 등)		200,000	p421
공원녹지과	아름다운 달성만들기 사업	1,000,000	1,500,000	p426
	백년숲 일원 경관개선 사업		300,000	p426
	마을숲 조성		400,000	p426
	국도5호선 가로숲 조성		300,000	p427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매입		3,900,000	p430
	옥연지 수변복합 문화공원 조성		3,000,000	p431
	화원동산 사문진 피아노 100계단 조성		500,000	p431
	화원동산 놀이공간 설치		500,000	p431
	둘레길 정비		800,000	p435
	비슬산 자연휴양림 통나무집 개체공사	400,000	600,000	p436
정책사업과	오리 및 오리알 조형물 설치		200,000	p455
	한국잼버리 행사장 기반 공사		700,000	p456
	비슬산 연수원 건립공사		7,000,000	p457

부 서 명	사 업 명	전년도	예산액	<u> </u>
경 제 과	현풍공설시장 내 노후건물 재정비사업 보상비		1,300,000	p465
	현풍공설시장 내 노후건물 철거 공사		100,000	p465
문화체육과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50,000	950,000	p486
	군민체육관-스포츠파크간 연결 육교설치공사	80,000	800,000	p487
	달성종합스포츠파크내 게이트볼장 개선공사		500,000	p487
	화원 명곡인라인스케이장 시설변경공사		800,000	p487
	달성강변야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120,000	p487
	기타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공사	200,000	200,000	p487
관 광 과	달성12경 홍보 표지판 설치 및 정비		10,000	p492
	마비정벽화마을 조성 및 유지·보수		100,000	p493
	계류장 추가설치		300,000	p494
	화원동산내 일반·휴게음식점 건축공사		500,000	p496
	문화재 긴급보수비	50,000	200,000	p497
농촌지도과	옥포 농기계 임대사업장 증축		416,069	p566
	하빈 농기계 임대사업장 증축		191,736	p566
	마을쉼터 설치 및 유지보수	100,000	100,000	p569
	청사 유리창 교체 공사		22,500	p586
	청사 부지 정형화 지역 조경공사		22,500	p586
의회사무과	의정홍보관 설치		25,200	p594

○ 읍·면예산의 경우

- 읍·면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읍장은 330만원, 면장 240만원으로 비교증감이 없으며,
- 읍·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로 읍은 3억, 면은 2억 5천만원으로 일괄 편성하였으며.
- 전체적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청사관리 등 시설유지관리 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규모는 화원 42억여원, 논공 36억여원, 다사 45억여원, 가창 22억여원, 하빈 20억여원, 옥포 22억여원, 현풍 22억여원, 유가 24억여원, 구지 23억여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천 4백만원이 증가된 4억여원으로 의료급여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및구료비(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요양비지원 등)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74억원이 편성되고,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800만원이 증가된 73억 700만원으로 예비비 54억 3천여만원, 금포천 상류 정비공사 3억원, 송촌리 본리천 및 지천 정비공사 3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2억 4,100만원으로 옥포농공단지 폐수처리 지원 1,800만원, 옥포농공단지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종합검토의견

○ 2016년도 재정운용 여건을 보면

<세입여건>은 그리스사태 및 IS등 국제정세와 경기가 불안정하고 부동 산경기 여건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내수 회복세에 따라 점진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신설, 자체수입확충의지 등으로 예년보다 증가될 전망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감액으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의 개별급여 시행 등 주요복지제도 개편으로 지속 증가될 전망입니다.

<배출여건>에서는 정부의 복지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확대 및 재난 안전관리, 문화·예술, 체육 등 투자 확대가 전망되고 환경개선 및 지역개발에 따른 지출수요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옥포 보금자리 등 관내 전지역의 아파트 신축과 대구테크노폴리스와 국 가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증가요인을 감안하여 지방세는

전년대비 13.84% 증가한 114,338백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5.86% 증가한 26,155백만원 등 자체수입에서는 수입 증가요인을 적극 반영하여

계상한 점은 바람직하며,

- 노령연금 등 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하여 지방재정운용에 어려움이 기중되고 있으며 국가재정운용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증가요인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에도 지방교부세를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한 것은 제반여건 등의 분석이 다소 미흡하게 생각됩니다.
-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성 있는 운용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 투 자심사를 거치는 등 예산편성의 사전절차에 누락된 대상사업은 없는 것으 로 검토되었습니다.
-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원근거에 맞게 지원하고 집행결과에 대한 철저한 정산과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됩니다.

< 2016년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

구 분	편성액	한도액
지방보조금(계)	11,359백만원	14,700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2,464백만원	(※ 한도액 :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371백만원	국시비보조금과
-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2,332백만원	지방비부담분을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307-10)	788백만원	제외한 순수한
-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837백만원	군비예산만
-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4,567백만원	해당)

-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합법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증하고, 불합리한 투자로 인한 재정의 낭비요인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도내에 집행가능액만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부터 분리하여 독립적 으로 회계처리 하는 회계입니다.

페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어 특별회계의 목적을 다하고 있는지, 효율적 예산운용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으며 특별회계 활용용도를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자체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Ⅰ.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1월 2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도시과)

3. 제안이유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2015.1.1. 시행됨에 따라 제2절 제3호에 의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대 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953개소) 중 우선해제시설(4개소)을 제외한 나머 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949개소) * 우선해제시설 5개소 중 1개소는 일부해제
 - 도시계획시설 현황

2015.12.31. 기준

7	분	계	모	주차장	공 원	녹 지	연구시설	학 교	기타시설
전 체	개 소	<u>3,071</u>	2,441	94	94	188	3	44	207
	면적(천㎡)	<u>12,989</u>	5451.8	152.6	220.3	3,007.8	1,397.6	602.9	2,156.0
집 행	개 소	<u>2,118</u>	1,582	63	56	165	2	43	207
	면적(천㎡)	<u>9,476.2</u>	4052.5	133.6	129.5	1,337.8	1,064.5	602.3	2,156.0
미집행	개 소	<u>953</u>	859	31	38	23	1	1	0
	면적(천㎡)	<u>3,512.8</u>	1,399.3	19.0	90.8	1,670.0	333.1	0.6	0
집행율(%)		<u>73.0</u>	74.3	87.5	58.8	44.5	76.2	99.9	100.0

- 집행 소요예산 : 군비 8,505억원, 국비 및 시비 156억원
- O 단계별 집행계획: 2016년~2018년 521억원, 2019이후 8,140억원

- 군 비 (단위 : 천m², 억원)

	합 계			2016	~2018	(1단계)	2019 이후(2단계)		
구 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개소	면적	급색	개소	면적	<u> </u>	개소	면적	= 팩
계	948	3,173	8,505	59	128	501	889	3,045	8,004
도로	856	1,393	6,054	44	97	427	812	1,296	5,627
주차장	31	19	73	-	-	-	31	19	73
공원	38	91	180	15	31	74	23	60	106
녹지	23	1,670	2,198	_	_	-	23	1,670	2,198

- 국비 및 시비

(단위: 천m², 억원)

구 분		합 7	4	2016~2018(1단계)			2019 이후(2단계)		
	물량		그애	물량		그래	물량		그애
	개소	면적	금액	개소	면적	금액	개소	면적	금액
연구시설	1	333	156	1	_	20	1	333	136

5. 관계법령

- O「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Ⅱ. 검토의견

201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달성군 소관 도시계획시설은 3,071개소 13k㎡가 결정되어 있으며, 그 중 집행완료 된 도시계획시설은 2,118개소 9.5k㎡로 집행율은 73%이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953개소에 3.5k㎡입니다.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 부터 2년 이내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53개소 중 설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된 4개소를 제외한 949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 이 중 연구시설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국·시비로 집행이 되며, 도로,주차장,공원,녹지는 군비 8,505억원으로 집행하고 2016년~2018년 제1단계에서는 501억원, 2019년 이후에는 8,004억원의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 시설별로는 도로가 856개소 6,054억원이 소요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녹지가 23개소로 2,198억원으로서 이 두 시설이 미집행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시설별 집행부서에 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대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관계법령 **1**부.

<붙임>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5.8.11.] [법률 제13475호, 2015.8.11., 일부개정]

-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한다. <신설 2011.4.14.>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시행일:2012.7.1.] 제4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2012.7.1.] 제85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7.29.] [대통령령 제26316호, 2015.6.15., 타법개정]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4.10., 2014.11.11.>

-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4.10., 2014.11.11.>
-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4.10.>
-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한다. 〈신설 2012.4.10.〉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 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 ① 제6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한다. <신설 2012.4.10.>
-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4.10.>
 - ③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1.7.1.>
 - ④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해제 기준

-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집행순위
- (1)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중인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정한 단계 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고한다.
 - ①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와 2-1단계에 포함되는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여 반영하여 야 한다.
 - ②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시설별 집행부서(설치의무자 포함)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고한다.
- (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일부터 미집행기간이 긴 시설은 집행의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분류한다.

(3) 현재 토지이용상 지장물 유무 및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집행의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분류한다.

부 칙

본 가이드라인은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개 요

1. 제 출일: 2015년 11월 10일

2. 제 출 자 : 김성택 의원(대표발의)

3. 제안이유

○ 군의회에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집행 부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의안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O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
 -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안 제2조제5호)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2조, 제117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2조에 따라서 달성군의회에 출석 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소통과 전문분야에 대한 내실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 고자 안 제2조제5호를 신설하여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도 출 석・답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 O 일부 문구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이 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 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 2) 신 · 구조문대비표 1부.
-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를 "「지방자치법」제4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 또는 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각종 위원 회"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 하 의회 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 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

혀

제4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이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 회 조례 시 제2조에서 정한 각종 위원 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

정

안

개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제2조(범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 위는 다음과 같다.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기제2조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

- 1. ~ 2. (생략)
- 3.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 4. (생 략)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 3.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 4. (현행과 같음)

적으로 한다.

5.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붙임 3)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42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 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제117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1월 10일

2. 제 출 자 : 하용하 의원(대표발의)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4. 10.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달성군의회 의원에 대한 2016년도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 달성군의회 의원에게 2016년도에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 기 준액을 정함.(월 1,747,600원 → 1,782,550원)(안 제3조제2항)
- 나. 기타 알기 쉬운 법령체계에 맞추어 용어를 순화하고 명확하게 정 비함.

5. 관계법령

- O「지방자치법」제33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 O 달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 공문(사본)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라 달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달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통보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2%범위내에서 전년도의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16년 월정수당의 지급액을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으며,
- O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달성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지난 2014년 10월 28일자 달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금의 월정수당 월 1,747,600원을 2016년도에는 월 1,782,550원(2%인상)으로 변경 지급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안 제3조, 별표2),

기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문구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업도록 재정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O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 ②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달성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③ 의정활동비는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원활한 직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 수당을 지급한다.
 - ②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달성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③ 월정수당은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4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공무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비를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공무여행 중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별표 3】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국내여비를 지급한다.
 - ③ 제1항의 공무여행 중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별표 4】의 지급기준표 에 따라 국외여비를 지급한다.
 - ④ 의원의 국·내외 공무여행은 의원 출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공무 원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의	정	활	동	비	
월 1,100,000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0,000원, 보조활동비 200,000원)						

【별표 2】(개정 2005. 9. 30, 2006. 5. 15, 2007. 12. 3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구 분	지 급 액
2016년 월정수당	월 1,782,550원
2017~2018년 월정수당	매년 전년도의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인상하되 2%를 초과할 수 없음

【별표 3】(개정 2006. 5. 15, 2006. 10. 4)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4조 제2항 관련)

(단위 : 원)

7.	ㅂ	철 도	선 박	항 공	자동차	일 비	숙박비	식 비
1	분	운 임	운 임	운 임	운 임	(1일당)	(1야당)	(1일당)
의	원	1등급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 ※ 비고 : 1. 의희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특실 정액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 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개정 2006. 10. 4)
 -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국 외 여 비 지 급 기 준 표 (제4조 제3항 관련)

(단위 : 미불화)

			항 공	자동차	일 비	숙 박 비	식 비	÷	 준 비	금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15일	15일이상	30일이상
			운 임	운 임	(1일당)	(1야당)	(1야당)	미만	30일미만	20 5 1 9
의 장 부의장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 급의 철도임	는 경우에는 최 상등급의 선임	1등정액	— 실비액	가등급 35 나등급 35 다등급 35 라등급 35	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140	170	195
의 원	요금 또는 침대	로 인하여 급행 요금 또는 침대 요금을 필요로	2등정액	글 이 택	가등급 30 나등급 30 다등급 30 라등급 30	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	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	130	155	180

[※] 비고: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붙임 2)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바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10.8.. 2014.6.3.>
-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4]

<u>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u>(제33조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T 판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7] 〈신설 2008.10.8〉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1.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

가. 계산식

○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월정수당의 자연로그 값 =

6.252 + 0.298 × (해당 지방자치단체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 0.122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의 자연로그 값)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더미변수) 값

- · 재정력지수: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의 지방교부세 및 당초예산 기준의 자치 구재정조정교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산정한 지수
- ·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인구통 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민 수
- · 더미변수 값: 특별시·광역시·도(0.249) / 50만 이상 시(0.092) / 50만 미만 시(0.031) / 도·농복합시(0.023) / 군 (0) / 자치구(0.105)

나. 기준액(단위: 만원/연액)

· 월정수당 자연로그 수치를 실제 값으로 환산한 금액 = EXP(월정수당 자연로그 값). 다만, 환산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천원 단위(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

·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퍼센트를 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당시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하한 범위 이하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3.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인상 기준

·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음 연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한 후, 기존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연도부터 새로운 지급기준을 결정한 연도(새로운 지급기준이 적용되기 바로 전년도를 말한다)까지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대구의 뿌리 달성 꽃피다



달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달성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달성군의정비심의 위원회, 를 개최하고, 제7기 달성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결정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1. 개최일자 : 2014. 10. 28(화) 15:00~

2. 심의장소 : 달성군청 8층 상황실

3. 참석위원 : 10명

4. 심의결과

가. 2015년 의정비 지급기준 : 동결

- 합 계 액: 34.171.200원(월 2.847.600원, 현행과 같음) - 월정수당 : 20,971,200원(월 1,747,600원, 현행과 같음)

- 의정활동비 : 13,200,000원(월 1,100,000원, 현행과 같음)

나. 2016년 ~ 2018년 3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여부

- 매년반영. 단, 매년 2% 범위내 적용

다. 여비 지급기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의 규정 범위내. 끝.

달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



수신자 달성군수, 달성군의회의장

시행 달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2014.10.28) 우 711-790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전화 053-668-2112

전송 053-282-7102

/ 대국민 공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Ⅰ.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1월 10일

2. 제 출 자 : 엄윤탁 의원(대표발의)

3. 제안이유

O 법률고문을 두어 입법 및 의정활동에 대한 법적 체계를 확립하고, 의사 운영 및 의안심사 등에서도 자문을 통해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나. 법률고문의 직무 규정 (안 제2조)
- 다. 법률고문의 위촉 및 해촉 사항 명시 (안 제3조~제4조)
- 라. 법률고문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및 소송 위임 근거 마련 (안 제6조~제7조)

5. 관계법령

O「지방자치법」제22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의회의 입법 및 의회운영 등을 위한 의정활동 이 갈수록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의정역량과 입법 및 법률기능의 강화이며,
-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고문의 직무로써 각종의안 과 소송 등 의회운영에 대한 자문 등
- 안 제3조~제4조는 고문의 위촉 및 해촉에 대한 내용으로 고문임기 는 2년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 안 제5조~제7조는 사건실적부 비치와 월15만원의 수당지급과 출석 수당 별도 지급,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대하여 명시함과,
- 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입법·법규해석 및 복잡 다양한 쟁점사안 등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과 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률고문 제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O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의 검토 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입법활동, 의안심의 및 그 밖에 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의 자문 또는 처리를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심의·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적 자문에 관한 사항
- 2. 의회 또는 의장이 당사자가 된 소송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거나 그 와 관련된 법적 자문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의회에서 처리하는 사무에 대한 법적 자문에 관한 사항
-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위촉)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한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10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1인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 1항에 따라 변호사가 고문으로 위촉된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당 시 수 행 중인 소송은 해당 심급의 판결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위촉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해촉) 의장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2.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3. 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수행을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제3호 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 월 15만 원 이하의 수당(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별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대구광역시 달성 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1항의 출석수당의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 제7조(소송 등의 위임) ① 변호사인 고문이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 사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 「대구광역 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의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을 적용하거나 준용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의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을 준용한다.
- 1. 변호사인 고문이 소송사건 등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승 낙 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귀 의회의 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

> 년 월 일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법률고문 ○ ○ ○

귀하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법률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 위촉기간: . . ~ . .

000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별지 제3호 서식】

사 건 실 적 부

구분 종류	사건명	의 뢰 년월일	의 뢰 내 용	회 신 년월일	회 신 내 용	비고
입 법 활 동			,, 0		- 4 0	
법 령 해 석						
소 송						
기 타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Ⅰ.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1월 12일

2. 제 출 자 : 신영희 의원(대표발의)

3. 제안이유

O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전환과 관련 하여, 청원 신청 및 철회 시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 경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별지 제1호 서식(청원소개의견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청원철회요 구서) 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안 제2조 및 제14조)

5.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제24조의2
- O「국회청원심사규칙」제2조~제5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규칙에 대한 일부개정 이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 O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청원소개의견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청원철회 요구서) 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제14조)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 2) 신 · 구조문대비표 1부.
-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로 하고, "효율적인"을 "청원에 대한 효율적인"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을"로하고,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를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청원법」제5조·제8조 및 「국회법」 제123조제3항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원법」제8조에 따라"로 하고, "경우에는"을 "경우에"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의 규정에

따라"를 "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본회에"를 "본회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특별위원회"로 하며, 제6조제4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제17조 중 "위원회"를 각각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원소개의견서

취 이 이	주소		
청 원 인	성명	생년월일	
건 명			
소개연월일			
소 개 의 견			

소개의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청원철회요구서

청 원 인	주소			
्ठ र ी	성명		생년월일	
건 명				
청원제출일자		청원철:	회일자	
철회요구사유				

소개의원

(서명 또는 인)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제출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한다.	제1조(목적) 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회(이하 "의회"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 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 기관이 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 이 「청원법」제5조·제8조 및 「국회법」 제123조제3항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 니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 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의신청) ①청원이 <u>제4조제3호의</u>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 ① <u>「청원법」</u> 제8조에 따라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 라한다)를 구성·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각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한다. ②(생략)③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 라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심사기간의 연장은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현 행	개 정 안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u>위원회</u> 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u>위원회</u> 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제8조(청원인등 진술) ①본회의 또는 <u>위원</u> <u>회</u> 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생 략)	제8조(청원인등 진술) ①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생 략) ②본회의 또는 <u>위원회</u> 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u>당해</u>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u>당해</u> 의원의 이 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 에 의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 는 <u>위원회</u> 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제척과 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 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u>각 호의 1에</u>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아니하 기로 의결한다. 1. ~ 3. (생 략)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심사보고)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 2. (생략)	제11조(심사보고) ①위원회 또는 특별위 원회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u>위원회</u> 에의 회부 2. <u>위원회</u> 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 ~ 5. (생 략)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u>당해</u> 청원의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 <u>의 규정에 의한</u>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u>지방자치법</u> 및「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제17조(준용규정) <u>위원회</u> 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 구광역시 달성군의회위원회 조례」와 「대구 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붙임 3)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	------	------	----------	----	-----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삭제 <2013.8.6.>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삭제 <2013.8.6.>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 (청원서의 제출)

- ① 국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4조 (청원서 보완요구) 의장은 청원서가 제2조와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다.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5조 (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5조·제8조 및 국회법 제123조제3항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 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3.18.>
□ 「청원법」 제5조 (청원의 불수리) ①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청원법」 제8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 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 「국회법」 제123조 (청원서의 제출)

③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Ⅰ.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1월 12일

2. 제 출 자 : 신영희 의원(대표발의)

3.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전환과 관련 하여, 의원 신분증 등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O 별표(의원신분증 전면)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3조제1항)
- O 별지 제1호 서식(신분증 발급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 일"로 변경(안 제5조제1항)
- 별지 제2호 서식(신분증 재발급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 월일"로 변경(안 제5조제3항)

5.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 및 제24의2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이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 O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별표(의원신분증 전면)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3조제1항)
- 별지 제1호 서식(신분증 발급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로 변경(안 제5조제1항)
- 별지 제2호 서식(신분증 재발급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 월일"로 변경(안 제5조제3항)함과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O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 2) 신 · 구조문대비표 1부.
 -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의원"으로 하고,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를 "신분증"으로 한다.

제2조 중 "달성군의회 의원"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첨부하되"를 "붙이되"로 한다.

제4조 중 "달성군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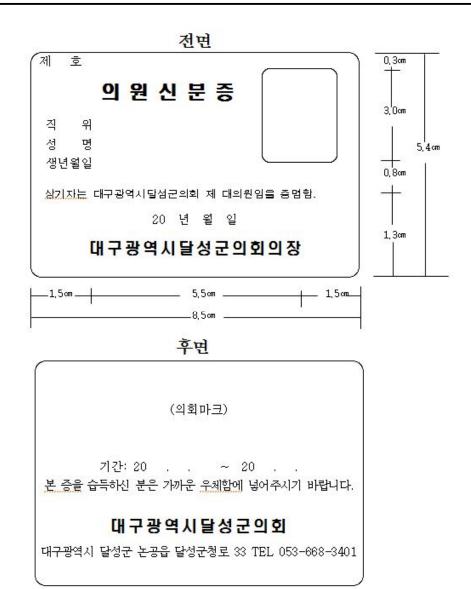
제5조제1항 중 "행하여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첨부한"을 "붙인"으로 한다.

별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 1. 사진규격 등

1.사진 (2.4cm×3.0cm)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의원신분증	16 포인트	헤드라인체			
발급기관장	13 포인트	울 릉 도 체			
상기자는 증명함	9 포인트	고 딕 체			
날 짜	7 포인트	명 조 체			
제 호	8 포인트	명 조 체			
의회마크	$3.8 \mathrm{cm} \times 3.8 \mathrm{cm}$				

3. 재질은 P.V.C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결재란	신분증 번 호	발 급 년월일	성 명	생년 월일	신 규 재발급	회 수 여 부	재발급 사 유	반 환	사 진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신분증 재발급신청서					
성 명					
생 년 월 일					
신 분 증 번 호					
재 발 급 신 청 사 유					
※ 사진 2매 제출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0					

190mm×268mm

(서명 또는 인)

신청인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달성군의회 의</u> 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u>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u> 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대구광역시 달성군</u> <u>의회 의원</u> <u>신분증</u>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u>달성군의</u> <u>회 의원</u> 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u>대구광역시 달</u> 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 <u>다)</u>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직위 인적사 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u>첨부하되,</u>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와 같다. ② (생 략)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u>붙이되</u>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u>달성군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u> 한다)이 발급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 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 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생 략)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발급하여야 한다. ②

붙임 3)

관계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삭제 <2013.8.6.>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삭제 <2013.8.6.>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1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

3. 제안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 함.

4. 주요내용

- 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안 제4조~제7조)
- 나.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안 제8조~제10조)
- 다.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안 제11조~제14조)
- 라. 민간협력 및 표창수여(안 제15조~제16조)

5. 관계법령

O「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6. 기타사항

-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10. 12. ~ 11. 2.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생략(「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

Ⅱ. 검토의견

함이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복잡·다난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 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 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 의 활성화와 주민의 권익보호와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
- O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4조~제7조에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익신고 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에 대한 규정을
 - 안 제8조~제10조에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 안 제11조~제14조에는 우수기업 선정 및 혜택부여, 환경조성 사업 선정 및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규정을
 - 안 제15조~제18조의 보칙에서는 민간협력, 표창수여 및 민원사무 처리의 특례를 규정하여 공익신고의 처리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안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 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O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 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 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 5.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에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 6.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 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 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 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군수는 공익신고 처리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제8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3.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 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4.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환경조성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 7.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익신고자 보호업무소관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받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

제11조(우수기업 선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군 지역 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 1.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규정을 정관 또는 사규에 명시
- 2. 공익신고 접수 · 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 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등 보호제도 교육 실시
-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 6. 그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2조(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의 부여)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 업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무 조사 운영 규칙」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우대할 수 있다.
- 제13조(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군수는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군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4조(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군수는 환경조성사업에 대해「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 제15조(민간협력)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한 민간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1. 군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 · 운영

- 2. 군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의 개최
- 제16조(표창의 수여)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7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군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무를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 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 신고자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을 말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1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법무규제개혁실)

3. 제정취지

○ 상위 법령 위반 등으로 법제처, 행정자치부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하여행정규제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군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항의 개선(안 제1조~제2조)
- 나.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의 삭제 (안 제3조)

5. 관계법령

- O「사회복지사법」제34조
- O「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제21조
-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제21조의2

6. 기타사항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 원안 동의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9. 25. ~ 10. 15.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달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의 제정이유로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불합리한 11대 분야 지방규제」의 개선 과제로 발굴 및 통보된 3건의 행정규제를 신속히 일괄 정비할 필 요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며,
-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방 규제 정비사업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 는 임의규제,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지방 규제를 개선 하여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 '14. 4월부터 1단계 건축 및 국토·산업·농업·환경의 5대 분야 와, '15. 4월부터 2단계 문화관광·지방행정·해양수산의 3대분야, '15. 6월부터 3단계 보건복지·산림·교통의 3대분야로 총 11대 분야를 선정,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단계에 걸쳐 정비를 하여 규

제개혁이 완료되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가 가시화되리라 봅니다.

-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 안 제1조~제2조에는 「달성군 노인복지관 및 달성군 장애인복지 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연장이나 재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및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제를 개선하고,
 - 안 제3조에는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제5조의 이용자의 행위제한은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행위에 해당되어 제5조를 삭제를 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군민불편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 O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의 단서 부분 중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한다.

제2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의 단서 부분 중 "재계약에 의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9조 중 "제5조에 따른 이용자의 행위제한과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을"을 "제6조의 시설사용료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위탁기간을 연장 할수 있다</u> .	제4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운영) ①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계약에 의하여재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용자의 행위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확성기 사용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3. 위험물 및 악취물을 반입하거나 폐기물등을 투기 또는 방치하는 행위 4. 임지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임산물의 굴취, 채취 및 야생조수를 포획하는 행위 5.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애완동물(개·고양이 등)을 데리고 입장하는행위(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예외) 6. 불법 상행위를 하는 행위 7.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출입행위 8.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휴양림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삭 제>
제9조(이용자 행위제한 등의 게시) <u>제5조</u> 에 따른 이용자의 행위제한과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 행위제한 등의 게시) <u>제6조</u> 의 시설사용료는

붙임 3)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u>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u>제40조</u>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u>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보건복지</u> <u>부령으로 정한다.</u> <개정 2011.8.4., 2012.1.26.>[제목개정 2011.8.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5.>
-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5.>
-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3.7., 2008.11.5.>
-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u>법 제34조제4항</u>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2. 위탁계약기간
-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제21조제2항</u>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1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자치행정과)

3. 제안이유

O 현행 조례로는 읍면 행정리 신설 또는 폐지 시, 본 조례와 함께 반 설치 조례 또한 개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중복과정 개선을 위해 두 조례 연 관 부분을 통합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기존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추가하여 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5. 관계법령

O「지방차치법」제4조의2

6. 기타사항

- (1)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10. 8. ~ 10. 28.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읍·면의 행정리 신설 또는 폐지 시, 위 두 조례를 모두 개정하여야 하는 행정력의 낭비와 업무의 비효율성 이 있기에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 O 위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2항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 설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제5항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O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 2) 신 · 구조문대비표 1부.
 -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읍·면 및 리"를 "읍·면·리 및 반"으로 한다.

제2조 중 "같다"를 "같으며,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3과 같다"로 한다.

제2조의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리·반 의 명 칭 및 관 할 구 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개정 2000.7.10, 2000.11.10, 2002.9.30, 2004.2.20, 2006.10.4, 2007.3.2, 2008.7.10, 2009.4.10, 2009.11.10 2010.12.30, 2011.7.11, 2012.9.20, 2015.9.30)

읍 면	리	반	구 역
화원읍	천내1리	제 1 반	1~177, 123~499, 761, 119~121
		2	452~471
		3	516~736(582-1, 583-1, 606-1, 607-1,
			610-1, 611-1, 650-1, 650-2, 652-4,
			652-5, 652-6, 661-2, 661-3, 662-3,
			663-5, 663-6, 663-7, 663-8, 664-3,
			666-4, 667-3, 667-4, 668-3 제외)
		4	737~758
		5	812~827
		6	830~847
		7	848~859
		8	860~877
		9	878~887
		10	888~901-65(897-1, 898-4, 898-6, 898-8,
			900-4제외)
		11	472, 53~53-15, 54-1
	천내2리	제 1 반	61~99, 129~156(138-1제외)
		2	169~274
		3	255~274
		4	276~289
		5	290~365
		6	366~379
		7	380~399
		8	400~408
		9	409~416
		10	418~427, 901-1~901-59
	천내3리	제 1 반	32, 471~545
		2	546~597
		3	602~625
		4	627~658
		5	659~677
		6	678~691
		7	85~376
		8	14-3~70

이하 화원읍, 논공읍, 다사읍, 가창면, 하빈면,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의 각 리, 반 명칭 및 관할구역 : 생략

(현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별표]'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같음)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u>읍·면 및</u>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읍·면·리 및</u> <u>반</u>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1과 <u>같다.</u>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u>같으며, 반의 명칭과</u> 관할구역은 별표3과 같다.

붙임 3)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개 요

1. 제 출일: 2015년 11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자치행정과)

3. 제안이유

O 연관성 있는 두 조례 일부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 도모.

4. 주요내용

○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삭제.

5. 관계법령

O「지방자치법」제4조의2

6. 기타사항

(1)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10. 8. ~ 10. 28.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 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반 설치 조례는 읍·관할구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별표 내용을 폐지하고, 이를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에 추가하는 것으로써「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5항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O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 2) 신 구조문대비표 1부.
-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조직에"를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로 한다.

제2조 중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읍 • 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를 "읍 • 면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수행을"로 한다.

제4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제2조(하부조직) <u>행정시책의 원활한 말</u> 단침투와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제2조(하부조직) <u>읍면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u> 효율적 수행을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삭 제>

붙임 3)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Ⅰ.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1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주민지원과)

3. 제정이유

○ 달성군 보훈회관의 건립에 따라 보훈회관의 건립 취지를 살리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시설사용 목적 및 대상 등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함.

4. 주요내용

- 가. 달성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의 목적
- 나. 시설의 운영방법 및 이용대상자 규정
- 다. 운영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5. 관계법령

O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6. 기타사항

-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10. 8. ~ 10. 28.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달성군 보훈회관이 2015년 12월 준공예정에 따라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이며, 또한 필요시는 보훈회관의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재위탁 할 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 O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제3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하여
 - 안 제4조~제8조에는 시설의 입주 및 이용자격, 입주자협의회, 관리·운영사무의 위탁과 위탁기간, 재계약, 수탁자의 의무
 - 안 제9조~제15조에는 운영지원, 지휘·감독, 위탁해지,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사용과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적절한 시설관리·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O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설치되는 시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비슬로 458길 10"에 둔다.

제3조(보훈회관의 기능) 보훈회관은 보훈단체 육성·발전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제4조(입주 또는 시설이용 자격)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국가유 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국가보훈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또는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보훈발전에 공로가 있는 단체로서 보훈회관의 사용허가 신청을 한 자 중에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보훈회관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한다.

- ② 보훈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2. 군수 또는 제6조에 따른 관리·운영사무 수탁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

제5조(입주자협의회)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는 그들로 구성된 입주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조직할 수 있다.

제6조(관리·운영사무의 위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 관리·운영사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7 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③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계약위반 시 책임에 관한사항 등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보훈회관 관리·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 내로 한다.

② 군수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운영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수탁자와 재계약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보훈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관리·운영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하여야 하고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한다.

-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수탁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변경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리·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계 규정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탁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수 있다.

-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위탁 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 2. 수탁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
- 3. 수탁자가 제6조제3항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제10조에 따른 지휘·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수탁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협약의 해지, 위탁기간의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 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시설물의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의 멸실,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 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및 시설운영규정) 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규칙이 정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 훈회관 건립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훈회관 위탁관리 운영(재계약) 신청서

-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 위탁(연장)기간:
- * 특이사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의 위탁운영(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인)

달성군수 귀하

붙임 2)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회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2. <u>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u>: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 3. <u>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u>: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 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妻)
- 4. <u>광복회의 회원</u>: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각각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 5. <u>4·19민주혁명회의 회원</u>: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 6.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 7. <u>4·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u>: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 8. <u>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u>: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 9. <u>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의 회원</u>: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1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주민지원과)

3. 제안이유

○ 참전유공자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전상군경, 고엽 제후유의증 유공자로 확대지원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미적용 대 상자 항목인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

- 가.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부적 격자로 통보한 사람(제1호)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상금 또는 수당을 받는 사람(제2호)
-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사람(제3호)

5. 관계법령

O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6. 기타사항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 원안 동의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10. 8. ~ 10. 28.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에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의 확대지원을 위해「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원대상 에서 제외되었던 지원 미적용 대상자 항목인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 제1호인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이란,「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상습적으로 대통령 령이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자를 말하며,

- 제2호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 호·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상금 또는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가 되며,
- 제3호인「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 위와 같이 65세 이상 전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등의 유공자분들에 대한 확대 지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정신 함양에 크게 기여 하리라 봅니다.
- O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참전 유공자 지원에서 제외된 사람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자) ① (생 략)	제4조(지원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②「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u>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u>	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
1.「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자 지원에서 제외된 사람은 이 조례를
<u>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u>	적용하지 않는다.
참전유공자 지원에서 제외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상금	
<u>또는 수당을 받는 사람</u>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사람	

붙임 3)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 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기존 조례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대구광역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2. 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 12. 31 조례 제4451호)

- 1.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 자로 통보한 사람
-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 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 3. **삭제 <2014.12.22.>**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변경 조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대구광역 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1호)<개정 2014.12.22.>

- 1. 삭제 <2014.12.22.>
- 2. 삭제 <2014.12.22.>

부칙 <개정 2014.12.22.> 이 조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Ⅰ.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1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환경과)

3. 폐지이유

- 가. 본 조례는 환경보전과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8. 10. 1. 제정(조례 제1639호)·시행하여 왔으나,
- 나.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 조례의 목적이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개선사업,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환경개선사업의 지원, 환경보전 우수기관·단체· 개인에 대한 시상을 목적으로 규정되어있으나
- 다.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개선사업,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환경개선사업, 각종 환경보전 시상에 환경보전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는 등 지속적인 기금운용의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아 본 조례를 폐지하고 자 함.

4. 주요내용

O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5. 관계법령

O「지방자치법」제22조

6. 기타사항

(1) 성별/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10. 8. ~ 10. 28.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일반・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분히 편성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지원 사업은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강화를 위해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1항의 불필요한 기금의 통합·폐지 규정에 따라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의 기금용도의 예산은 우리 군 일반회계에서 사용함으로써 별도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O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 지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1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환경과)

3. 제안이유

- 가.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고 있음
- 나. 2013. 1월 이후 물가 등 인상요인이 미 반영된 수수료로 인해 분 뇨 수집·운반업자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 다. 2015. 7월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토대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인상하여 분뇨 처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자 함.

4. 주요내용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 수수료를 책정하여, 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대민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코자 분뇨 수 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인상함 (안 제7조 별표1)
 -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인상 (안)

구분	수수	료(원)	нJ	7	
丁七	현재	인상		1/	
기본요금(0.75㎡까지)	11,720	13,380	市 처리시설	유입 처리	
초과요금(0.1㎡마다)	1,140	1,250	수수료 포함(1	.0ℓ당 10원)	

5. 관계법령

O「하수도법」제41조

6. 기타사항

-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9. 30. ~ 10. 20.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생략(「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우리 군에서 분뇨 수집·운반 허가업자에 게 대행하고 있는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의 수수료를 수수료 원 가분석 결과에 따라 인상요인을 반영한 요금으로 조정하고자 함이며,
- O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으로는

2015. 7월 대구시에서 실시한 원가분석 용역결과에 따르면 수수료 적정 인상률이 19.97%로 산정되었으나 우리 군은 수수료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을 줄이고 대구시 타구의 수수료 인상예정액과 형평을 맞추어 기본요금 14.2%, 초과요금 9.7%를 인상한 기본요금 11,720원이 13,380원(증1,660원)으로, 초과요금 1,140원이 1,250원(증110원)으로 결정하여 인상되며 이는 2013년 이후 처음 요금을 인상하여 서민의 요금인상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가 되며 향후는 순차적으로 차츰 인상을 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경영개선 효과도 이뤄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 O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 2) 신 구조문대비표 1부.
 -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뇨의 수집 · 운반 및 처리수수료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수수료	
1 L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0.75㎡까지)	12,630원	750원	13,380원
초과요금 (매0.1㎡ 마다)	1,150원	100원	1,250원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포함) 수수료를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처리수수료를 말함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 안	
【별표 1】				【별표 1】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제7조제1항 관련)			집 • 운반 제7조제1	및 처리 ⁻ 항 관련)	宁 宁료		
부과기준		수 수 5		부과기준		수 수 료	
기본요금	수집・운반	처리	계 11 -2 2 2 2	기본요금	수집 • 운반		계 12 200 O
(0.75m³까지) 초과요금		750 원 ———	<u>11,72</u> 0원	(0.75m³까지) 초과요금	12,630원		13,380원
(매0.1m³마다)	1,040원	100원	<u>1,14</u> 0원	(매0.1m³마다)	<u>1,150원</u>	100원	<u>1,250원</u>
(오수처리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처리」는 처리시설이	: 분뇨처리/ 메의 유입 ㅊ			፠「처리」는 처리시설여			

붙임 3)

관계법령

□ 「하수도법」제41조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 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수 있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개 요

1. 제 출일: 2015년 11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청소위생과)

3.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시 수거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음식물류 폐기 물 "봉투 또는 전용봉투"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제9조 제3항 및 제6항 중 "봉투의 판매가격"과 "전용봉투" 삭제
- 나. 제10조제3항제2호중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를 삭제
- 다. 제11조 제목 중 "전용봉투"와 제2항 전용봉투 규정을 삭제
 -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을 "제11 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로 하고,
 -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규정을 삭제

5. 관계법령

O「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

6. 기타사항

-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10. 1. ~ 10. 21.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우리 군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시 수거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의 "봉투 또는 전용봉투"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이며,
- O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으로는
 - 제9조제3항 및 제6항 중 "봉투의 판매가격"과 "전용봉투"를 삭제 하고
 - 제10조제3항제2호 중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를 삭제
 - 제11조 제목 중 "전용봉투"와 제2항 "전용봉투" 규정과
 -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규정 삭제
 - 부칙에 시행일을 음식물 납부필증 인상과 연계하여 2016년 1월 1일 로 정하였으며, 이미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전용봉투"의 용어를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 2) 신 · 구조문대비표 1부.
 -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를 "납부필증"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를 "납부필증의"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 거용기에"를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 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 료의 부과·징수)
① ~ ② (생 략)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부피(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 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u>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u>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있다. ④ ~ ⑤ (생 략) ⑥ <u>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u> 판매소 공급액과판매수수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생 략)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 식물류 폐기물을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 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 식물류 폐기물을 <u>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u> 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 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 류·재질) <삭 제>
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	<삭 제>
<u>야 한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붙임 3)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1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청소위생과)

3. 제안이유

- 가. 대구광역시 구·군별 생활폐기물 수수료가 달라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단일화코자 하며, 전국 타 광역시 주민부담률 평균이 34.3%이나 대구시는 25.2%로 최하 수준이며, 15년 동안 억제한 수수료를 일부 현실화가 필요
-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 례가 폐지(2014.7.30)되어 정비
- 다. 쓰레기봉투의 색상을 조례로 명시되어 있어 시대에 맞게 변경 가능 토록 개정.

4. 주요내용

- 가. 종량제 봉투 색상 등을 시대에 맞게 변경토록 개정(안 제7조제2항)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 봉투는 흰색, 엷은 녹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를 삭제
-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로 관련 조례명 삭제(안 제6조, 제6조의4)
- 다. 대구광역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단일화를 위한 수수료 인상(안 별표 1, 별표 6)

라.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 중 "주민등록주소"를 "주소"로 하고, "자택"을 "사무실로 하며, "사무실"을 "휴대폰"으로 변경

5. 관계법령

O「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

6. 기타사항

-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10. 1. ~ 10. 21.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O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 대구광역시 구·군별 생활폐기물 수수료가 달라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구·군별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단일화 하고자 함이며,
- 생활폐기물 처리 주민부담률이 전국 타 광역시 평균 34.3%에 비해 대구시는 25.2%로 최하 수준이며, 15년 동안 억제한 수수료를 일부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고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 례가 2015. 7. 30 폐지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고
- 쓰레기봉투의 색상을 조례로 명시하고 있어 시대에 맞게 변경 가 능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 O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 안 제7조제2항 종량제 봉투 색상 등을 시대에 맞게 변경할 수 있 게 색상 규정을 삭제하고
- 안 제6조, 제6조의4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 안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수료와, "별표 6"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격을 대구시 생활폐기물 수수료 단일화에 따라 인상과
-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별지 제3호 서식 중 "주민등록 주소"를 "주소"로 하고, "자택"을 "사무실"로 하며, "사무실"을 "휴대폰"으로 서식을 변경하였으며
- 부칙에 시행일을 종량봉투 가격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인상시기에 맞춰 2016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 O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및 인건비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등 생활 폐기물 수수료의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 O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 2) 신 구조문대비표 1부.
 -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68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의거"를 "법 제68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의4제3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를 "법 제68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6,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개정 대비표

(제2조 및 제18조 관련)

O 가전제품

품 명	현 행		개정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규 격	수수료(원)
	500리터 이상	8,000	500ℓ 이상	9,000
냉장고	300리터이상	6,000	300ℓ이상 500ℓ미만	7,000
	300리터 미만	4,000	300ℓ 미만	5,000
세탁기	ロレコオ	4 000	8kg 이상	6,000
계약기	모든규격	4,000	8kg 미만	5,000
탈수기	모든 규격	2,000	(현행과 같음)	
청소기	ロヒユカ	2,000	업소용	2,000
정호기	모든규격	2,000	가정용	1,000
가습기	모든 규격	2,000	모든 규격	1,000
다리미			모든 규격	1,000
다리미판	모든규격	1,000	(삭 제)	
팩스기기			모든 규격	2,000
	80평 이상	8,000	264㎡형(80평)이상	8,000
에어컨디셔너	20평 이상	5,000	66㎡형(30평)이상	6,000
	20평 미만	3,000	66㎡형(30평)미만	3,000
	42 인치 이상	5,000	42 인치 이상	6,000
T.V	42 인치 미만	3,000	(현행과 같음)	
	받침대	3,000	(삭 제)	
7) Ž	H =1	2 000	대형70cm×65cm이상, 케이스포함	10,000
전축	본체	3,000	소형70cm×65cm미만, 케이스포함	7,000
스피커	1대당	2,000	모든규격	2,000
전축케이스	대(1m 이상)	6,000	(삭 제)	
	소(1m 미만)	3,000	(삭 제)	

Σ H	현 행		개정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규 격	수수료(원)
카세트	모든 규격	2,000	(삭 제)	
	모니터	3,000		
ਤੇ ਲ ਜੀ	본 체	2,000	모니터, 본체, 노트북	2,000
컴퓨터	키보드	1,000		
	테이블	3,000	(삭 제)	
프린트기	모든규격	2,000	(삭 제)	
복사기	모든규격	2,000	높이 1m이상	7,000
al x 스 H 크레 al	높이 1m 이상	4,000	۲ ما ۱ ما دا	E 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미만	2,000	높이 1m 이상	5,000
	가스렌지	3,000	ㅁㄷ 그거	2,000
전자(가스)렌지	전자렌지	2,000	모든 규격	
서 프 기	ロロフカ	2,000	업소용	2,000
선풍기	모든규격		가정용	1,000
고기치자기	높이 1m 이상	2,000	높이 1m 이상	3,000
공기청정기 :	높이 1m 미만	1,000	± of Im olv8	3,000
식기세척기	모든 규격	3,000	(현행과 같음)	
	석유난로	3,000	(현행과 같음)	
난로	전기난로	2,000	전기난로	2 000
	전기스토브	2,000	전기단도	2,000
기타소형가전			모든제품	1,000
오락기	가정용 모든 규격	2,000	업소용(높이1m미만)	3,000
밥솥(밥통)	모든 규격	2,000	(삭 제)	
비디오(VTR)	모든 규격	2,000	(삭 제)	
식기건조대 :	60cm 이상	6,000	(삭 제)	
기시선화네	60cm 미만	2,000	(¬ ^1)	
스탠드	모든 규격	1,000	(삭 제)	
전화기	모든 규격	1,000	(삭 제)	

○ 가구류

- \	 현 행		개정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규 격	수수료(원)
	120cm이상 1쪽	15,000	120cm장 1쪽	15,000
장롱	120cm미만 1쪽	10,000	90cm장 1쪽	10,000
	받침목 1개	1,000	(삭 제)	
	대형(6인용)	8,000	1인용	3,000
쇼파	중형(4 인용)	5,000	1 인 추가시	1,000
	소형(3인용)	3,000	(삭 제)	
A) FL	6인용 이상	5,000	(현행과 같음)	
식탁	6인용 미만	4,000	(현행과 같음)	
	가로,세로 1m이상	2,000		
상(판)	가로,세로 1m미만	1,000	모든규격	2,000
	교자상 모든규격	2,000		
	ㄱ 자 (1조)	36,000	120cm×50cm이상 1쪽	7,000
싱크대	찬장포함 (1 조)	24,000	- 120cm×50cm미만 1쪽	5,000
	— 자 (3개)	12,000	120CHI×50CHI미인 1약	3,000
책상	양수, 대형	5,000	양수, 대형	6,000
~ ~ ~ 6	편수, 소형	4,000	편수, 소형	5,000
	대형	10,000	120cm×180cm 이상	10,000
책장(책꽂이)	보통	5,000	50cm×90cm초과 120cm×180cm미만	6,000
			50cm×90cm이하	3,000
ગો બે રો	150cm 이상	20,000		
진열장 (유리쇼케이스)	100cm 이상	15,000	(삭 제)	
(11 41 22 11 1 2)	100cm 미만	5,000		
	킹 사이즈(K)	5,000	2인용(더블) 구조물	6,000
침대	더블사이즈(W)	4,000	1인용(싱글) 구조물	5,000
· 현네	싱글사이즈 (S)	6,000	2인용(더블) 매트리스	7,000
	8 로기 기 二(3)	4,000	1인용(싱글) 매트리스	5,000
돌침대			1인용	15,000
E [17]			2 인용	20,000

품 명	현 행		개정안	개정안	
- 古 · 5	규 격	수수료(원)	규 격	수수료(원)	
의자	111	1 000	대형(팔걸이 의자)	2,000	
의사	개 당	1,000	소형(팔걸이 없는 의자)	1,000	
			120cm×180cm 이상	13,000	
장식장	모든규격	4,000	90cm×180cm이상 120cm×180cm미만	9,000	
			90cm×180cm 미만	3,000	
화장대	거울 포함	5,000	거울 부착	6,000	
अ १ प	거울 제외	3,000	거울 미부착	3,000	
문갑	110cm이상	5,000	120cm이상	3,000	
□ 〒省 □	110cm미만	3,000	120cm 미만	2,000	
	6단 이상	7,000	6단	8,000	
	5 단	6,000	5단	7,000	
서랍장	4 단	5,000	4단	5,000	
	3 단	4,000	3단 이하	2 000	
	2단 이하	3,000	3 년 이야	3,000	
시 비구기	대 (3단 이상)	4,000	90cm×150cm이상	6,000	
신발장	보통 (3단 미만)	3,000	90cm×150cm미만	3,000	
응접세트	7인 이상	8,000	(٨١		
중엽세트	7인 미만	5,000	(삭 제)		

○ 기타생활용품

품 명	현 행		개정안	
五 3	규 격	수수료(원)	규 격	수수료(원)
쌀통	모든 규격	2,000	(현행과 같음)	
	대형(높이1.5m이상)	5,000	대형(높이1.5m이상)	3,000
벽시계	중형(높이0.5m이상)	3,000	중형(높이0.5m이상)	2,000
	소형(높이0.5m미만)	2,000	소형(높이0.5m미만)	1,000
장난감			10kg	2,000
(인형등)			5kg	1,000

<u>ы</u> п	현 행		개정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규 격	수수료(원)
가방류			모든 규격	2,000
	액자 100cm 이상	5,000	70cm×100cm이상	3,000
거울·액자	액자 50cm 이상	2,000	40cm×80cm이상	2,000
	액자 50cm 미만	1,000	40cm×80cm미만	1,000
캐비닛			90cm×150cm이상	5,000
게비것			90cm×150cm미만	3,000
화일케비넷	4단 이상	3,000	(٨)	
와 될게 비엇	3단 이하	2,000	- (삭 제)	
	그랜드	15,000	그랜드	18,000
피아노	업라이트	10,000	업라이트	13,000
			디지털	5,000
오르간(풍금)	모든 규격	4,000	(삭 제)	
전자오르간	모든 규격	4,000	(삭 제)	
문짝, 창문	유리있는 문짝	5,000	1 m² T	2 000
正句, 含正	유리없는 문짝	2,000	1 m'당	2,000
	대형(업소용)	20,000	1 ㎡이상 1 ㎡당	6,000
수족관	중형(가정용)	10,000	0.5㎡이상1㎡미만	9,000
	소형(어항)	3,000	0.5㎡ 미만	5,000
수족관받침대	모든규격	3,000	(삭 제)	
자전거	개당	2,000	성인용	3,000
^F센기 	세발자전거	2,000	어린이용	2,000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현행과 같음)	
유리	1m² 당	2,000	(현행과 같음)	
			대형 1 개당 1 ㎡이상	5,000
항아리			중형1개당 0.5m'이상 1m'미만	2,000
			소형1개당 0.5㎡ 미만	1,000
세면대	개당	3,000	개당	3,000
목재	나무묶음 직경 40cm	2,000	kg 당	1,000

Σ pl	현 행		개정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규 격	수수료(원)
	-1) r.L	F 000	좌변기	5,000
변기	개당	5,000	소변기	3,000
	유아용변기, 욕조	2,000	유아용	2,000
	전기장판	4,000	전기장판	2,000
전기담요 등	전기담요(3인용기준)	2,000	٣/١٥٠	2,000
	매트 킹사이즈(K)	10,000	옥매트(2인용)	6,000
	매트 더블사이즈(W)	8,000	오메트(1이요)	2,000
	매트 싱글사이즈(S)	6,000	옥매트(1인용)	3,000
	솜이불(장당)	2,000	(현행과 같음)	
이브 드	일반이불(장당)	1,000	(현행과 같음)	
이불 등	발매트	1,000	발매트	1 000
	전기담요(3인용기준)	2,000	걸 때 드	1,000
므테 그(오사)	20인조 이상	8,000	(삭 제)	
물탱크(옥상)	20인조 미만	5,000		
물탱크(저수조)	모든규격	2,000	(삭 제)	
프테크(E D D)			1 ㎡ 이상	10,000
물탱크(F.R.P)			1 ㎡ 미만	5,000
카펫	평당	4,000	3.3㎡ 당	5,000
애완동물집			모든 종류	3,000
아이스박스			모든 종류	2,000
옷걸이			모든 종류	2,000
마대			20Kg당	3,000
미싱케이스	모든규격	3,000	(삭 제)	
녹즙기(믹서기)	모든규격	2,000	(삭 제)	
돗자리(대자리)	모든규격	2,000	(삭 제)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삭 제)	
병풍	모든규격	4,000	(삭 제)	
보일러	20평형 이상	5,000	(삭 제)	
프린데	20평형 미만	3,000	(¬ ^")	

품 명	현 행		개정안			
표 경	규 격 수수료(원) 규 격		규 격	수수료(원)		
보일러기름탱크	모든규격	2,000	(삭 제)			
보행기	모든규격	2,000	(삭 제)			
비어키자	대	5,000	(삭 제)			
부엌찬장	보통	4,000	(삭 제)			
빙수기	모든 규격	2,000	(삭 제)			
빨래건조대	모든 규격	2,000	(삭 제)			
비키니 옷장	모든 규격	2,000	(삭 제)			
정수기	모든 규격	3,000	(삭 제)			
타자기	모든 규격	2,000	(삭 제)			
화장실 장식장	모든 규격	2,000	(삭 제)			
휠체어	모든 규격	4,000	(삭 제)			
기타	m² 당	5,000	(삭 제)			

- □ 상기외의 대형폐기물은 중량 및 크기를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함.
- □ 폐가전의 경우 부품이 완전한 경우 무상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부품이 일부 없을 경우 유상수거를 실시함.

[별표 6]

쓰레기봉투가격(제18조 관련)

(단위:원)

용량별		현 행		개정안			
(1)	공급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5	112	8	120	137	13	150	
10	204	16	220	264	26	290	
20	398	32	430	510	50	560	
30	591	49	640	774	77	850	
50	969	81	1,050	1,274	126	1,400	
75			1,570	1,893	187	2,080	
100	1,917	163	2,080	2,521	249	2,770	

【별지 제1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신청서

제 호

	성 (업 체	명 명)	()	전화번호	사무실			
배 출 자	생년월	[일			12722	휴대폰			
	주	소							
최초도급자	성 (업 체	명 명)	()	전화번호	사무실			
(공사의 전부를	생년월	[일				휴대폰			
최초로 도급받은 자)	주 소								
폐 기 물 배 출 장 소									
폐 기 물 종류 및 수량									
수 집 운 반 차 량 번 호		수납	수 료 부 자	로 □ 배출자 □ 최초도급기					
상기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코자 합니다.									
년 월 일									
			ć]청인		(서명 :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달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 최초도급자의 경우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

제 호

세 오					
	업체명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처리시설	소 재 지		전화번호	사무실	
(매립·소각장) 사용료	주 소		선확인모	휴대폰	
납부의무자	운반차량 번호		폐기물의종		
	처리장소	□ 위생매립장 □ 성서소각장	류 및수량		
배출자	업 체 명		성 명		
(공사의전부를 도급받은자 포함)	소 재 지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매립·소각장 폐기물처리량	총량(kg)	공차중량(kg)	처리량(kg)	사용료납부 금액(원)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에 서 기재)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수하여야 합니	<u>시행령 제7조 및</u> 니다.	및 시행규칙 >	제14조 별표5	의 기준을 준
대구광역시 및 폐기물 시 처리/		: 관리에 관한 조]자임을 확인합니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
		년 월	일		

달 성 군 수(인)

【별지 제3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 통보서

제 호

	업 체 명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사무실	
처리시설	주 소		선위선도	휴대폰	
(매립・소각장)	운반차량				
사용료	번 호				
납부의무자			폐기물의종류		
	처리장소	□ 위생매립장	및 수량		
	7476	□ 성서소각장			
배출자	업 체 명		성 명		
(공사의전부를	소 재 지		생년월일		
도급받은자	- ,		-1 -1 -1	사무실	
포함)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매립 • 소각장	ج عادر ر	コミスポイン	=1 =1 =1-11 \	사	용료납부
폐기물처리량	총 량(kg)	공차중량(kg)	처리량(kg)	<u>-</u>	금액(원)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에					
서 기재)					
,	폐기물관리	법 시행령 제7조	도 및 시행규칙	제14조 별	<u>표5</u> 의 기준을 준
준수사항	수하여야 한	합니다.			
대구광역시 및	달성군 폐기	기물관리에 관한	· 조례 <u>제14</u> 조	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
 활폐기물 시 처리	기시설 반인]지정대상자임을	- 통보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달 성 군	· 수 (인)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②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및「대구광역시 달성군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관한 조례」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4(청결유지이행) ① ~ ② (생 략)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③ 제2항의 과태료 처분은 <u>폐기물관리</u> 법 제68조 및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 (생 략)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하되,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 봉투는 흰색, 엷은 녹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Ē	<u> </u>	행			개	정		안		
【별지 제	1호 서4	4]			【별지 제	호 서식]	1				
공사장생 제 호		물 등의 시	처리시	설 반입신청서	공사장생 제 호		등의 시	l 처	리시설	반입	신청서
	업체명		성			성 명 (업체명)	()	전화번호	<u>사무실</u>	
	(상 호)		명		배 출 자	<u>생년월일</u>			_ , _	<u>휴대폰</u>	
배 출 자	소 재 지		생년월일			<u>주</u> 소					
	<u>주민등록</u>		기위비수	자 택	최초도급자 (공사의	성 명 (업체명)	()	전화번호	<u>사무실</u>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중사의 전부를 최초로	<u>생 년 월 일</u>				<u>휴대폰</u>	
	업체명 (상호)		성 명		도급받은 자)	<u>주</u> 소					
수집 • 운반자	소 재 지		생년월일		폐기물 배출장소						
(위탁, 자체처리자) — ※ 매립장・ 소각장					폐 기 물 종류 및 수량						
	<u>주민등록</u> <u>주 소</u>		전화번호	사무실	수 집 운 반 차 량 번 호		수 로 답 부 자		배출자	□ 최초	- 도급자
말함	운반차량 번 호				상기와 같이	공사장생활폐	기물을 시	처리	시설에 반	입코자 형	합니다.
폐기물의 종류	루 및 수량						년 월	!	일		
상기와 같	이 공사장생	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	에 반입코자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는 인)
		년 ·	월 일	<u>.</u>	달성군수 귀히	i l					
		신청	인	(인)							
달 성 군 -	수 귀하				구비서류 :	최초도급자의 1부 수집운반차량 류 1부	의 본인 소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제 호 업체명(상호) 소재지		시설 반 약 성 명	입지정서		【별지 제2	호 서스]				
제 호 업체명 (상호) 소재지	·의 시 처리		입지정서								
업체명 (상호) 소재지		성 명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						
(상호) 소재지		성 명			제 호						
소 재 지							성 명				
		생년월일				(상호)		생년월일			
/ 지디시설	소 재 지 <u>자 택</u> 처리시설 전화번호	처리시설	소 재 지		- 전화번호	사무실					
(매립・소각장) 주민등록 사용료 주 소		2.72	<u>사무실</u>		(매립·소각장) 사용료	<u>주</u> 소		64,677	휴대폰		
납부의무자 운반차량 번호		폐기물의			됩구의주사 	납부의무자 운반차량 번호		폐기물의			
저리삿소	□ 위생매립장 □ 성서소각장	종류 및수량				처리장소	□ 위생매립장 □ 성서소각장	종류 및수량			
업 체 명		성 명				업체명		성 명			
배출자 (공사의전부를 소 재 지		생년월일 전화번호			배출자 (공사의전부를 도급받은자 포함)	소 재 지		생년월일			
도급받은자 포함) 주민등록			<u>자 택</u>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u>주 소</u>			사무실						휴대폰		
" - 0	공차중량(kg)	처리량(kg)	사용료납부 금액(원)		매립・소각장	총량(kg)	공차중량(kg)	처리량(kg)	사용료납부 금액(원)		
폐기물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 에서 기재)					폐기물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 에서 기재)						
│ 준수사항 │	법 <u>시행령 제7조</u> 하여야 합니다.		식 제 14 조 별.	<u>표5</u> 의	준수사항		법 <u>시행령 제7</u> 조 수하여야 합니다.		 칙 제 14 조 별표 <u>5</u> 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 공사장생활 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 달	정자임을 확인	합니다.	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공사장생활 폐기물 시 처리		지정자임을 확인		<u>조</u> 의 규정에 의거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	호 서식	1			【별지 제3:	호 서식]	1			
공사장생힅	할폐기물 눈	등의 시 처리시	설 반입지	l정 통보서	공사장생활	할폐기물 등	등의 시 처리/	시설 반입기	지정 통보서	
제 호					제 호					
	업 체 명		성 명			업 체 명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상호)		생년월일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소 재 지 주민등록		· 전화번호	자 택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소 재 지		— 전화번호		
납부의무자	<u>주</u> 소			사무실	사용료 납부의무자	주 소			휴대폰	
	운반차량 번 호		폐기물의 종류			운반차량 번 호		페기물의 - 종류		
	처리장소	□ 위생매립장 □ 성서소각장	및 수량			처리장소	□ 위생매립징 □ 성서소각징	및 수량		
	업 체 명		성 명			업체 명		성 명		
배출자 (공사의전부를 도급받은자	소 재 지		생년월일		배출자 (공사의전부를 도급받은자	소 재 지		생년월일		
포함)	^또 함) 주민등록	전화번호	<u>자</u> 택	포함)	주 소		전화번호	<u>사무실</u> 휴대폰		
매립 • 소각장	총 량(kg)	공차중량(kg)	처리량(k g)	사용료납부 금액(원)	매립 • 소각장	총 량(kg)	공차중량(kg)	처리량(k g)	사용료납부 금액(원)	
폐기물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 에서 기재)					폐기물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 에서 기재)					
준수사항		 법 <u>시행령 제7조</u> 준수하여야 합니		 ¹ 칙 제 14 조 별표 5	준수사항		법 <u>시행령 제73</u> 준수하여야 합니		 구칙 제 14 조 별표 5	
공사장생활		물관리에 관한 : 정대상자임을 통 년 월 일 성 군 수	보합니다.	<u>존</u> 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u>제14조</u> 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 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대상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인)					

붙임 3)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1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안전방재과)

3.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이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이 조례에 명시되는 경우에 가능하고 이에 따라 달성경찰서에서 법질서 확립 및 지역주민 안전에 기여하는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4. 주요내용

O 지역주민 안전(범죄예방, 교통사고예방 등)에 기여하는 민간단체 등 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규정(안 제38조)

5. 관계법령

- O「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6조의 2
- O「지방재정법」제17조

6. 기타사항

- (1) 성별/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2)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9. 21. ~ 10. 12.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생략(「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결성된 자율봉사 조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개정취지에 맞추어 보조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제38조에 추가로 범죄예방,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주민 안전에 기 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을 마련하였습니다.
- O 이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7호를 같은 항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범죄예방,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주민 안전에 기여하는 활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재정지원)	제38조(재정지원)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범죄예방,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
	<u>주민 안전에 기여하는 활동</u>
<u>7.</u> (생 략)	<u>8.</u>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붙임 3)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 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8.6.]

「지방 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 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I.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1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보건과)

3.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위반자 및 「지역보건법」제 29조를 위반한 보건소, 보건지소 등 동일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나.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안 제3조 및 제4조)
 -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음.
- 다.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 제5조)
 -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안 제6조)
 - 과태료 부과에 따른 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징수절차 등
- 마.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안 제7조)
 - 과태료 부과에 당사자가 불복시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법 원에 통보

- 바. 과태료 감경(안 제8조)
 -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시 100분의 20 감경
- 사. 가산금 징수 (안 제9조)
 - 과태료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 아. 체납처분 (안 제10조)
 - 과태료 미납부자에 대한 체납처분 처리
- 자. 수납부 (안 제11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 기록·관리
- 차. 준용 (안 제12조)
 - 이 조례의 규정 외 과태료 관련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 방세 기본법」을 준용

5. 관계법령

- O「지역보건법」제23조, 제29조, 제34조
- O「질서행위위반규제법」제16조부터 제4조의2까지

6. 기타사항

-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10. 1. ~ 10. 21.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서 건강진단 미신고 및 보건소 동일명칭 사용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군 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 O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3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와 보건소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를 부과대 상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는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제29조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으로 1차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제11조까지의 내용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이 조례의 규정 외 과태료 관련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과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였습니다.
- O 이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자)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자(이하 "처분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 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처분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6조(과태료 부과)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처분 통지서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받은 군수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군수는 처분대상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 제9조(가산금 징수) 군수는 처분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를 적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0조(체납처분) 군수는 처분대상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수납부 등)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 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기본법」 등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 관련)

위 반 내 용	근 거	부과금액(단위:만원)				
위 반 내 용	는 기	1차	2차	3차		
1.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1호	50	100	200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2호	50	100	200		

- 1.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부과한다.
-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전일부터 최 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4 차 위반부터는 3차 부과금액을 부과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제5조 제1항 관련)

문서번호

받 는 곳

귀하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예정된 처분의 내용을 미리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ᅒ	서분의	제목									
당사자	성	명									
3 ^r ^r	주	소									
처 분 의 되 는	원 ,	인 이 } 실	(난	기 부	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	})			
처분하고자 하는 내 용											
법적근기 내	Ӈ 및	조문 용									
		제		기관	반명		부서명		딛	남당자	
A)1	ข	<u></u>	/개 출 처	주	소				전	화번호	
의 견	제	제 출		전자 주	우편 소				모	사전송	
			저	[출기	한			년	월	일까	-ス]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제 🕯	<u>출 서</u> (제5조	제2항 관련)		처리기간 10 일	
1. 예정된 처분	의 제목				10 6	
2. 당 사 자	성명(명칭)					
2. 8 AF AF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대구광역시 에 따라 위와 7		역보건법 위반 제출합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5조제2항	
		년 월	일			
의견 제출'	인 주소 :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제6조제1항 관련)

문서번호 : 받 는 곳 :

제 목: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지역보건법」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34조 및「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 칭	종별
업소현황	개설자	생년월일 (남,여)
	소재지	
이 비사 제 이	일 시	
위반행위	내 용	
처분내용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 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제6조제2항 관련)

문서번호:

받는곳:

제 목: 과태료 납부 독촉

납 부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시업자등록번화)	
의 무 자	업소명 (시설명)	주 소 (소재지)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제6조제3항 관련)

	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	
	당초 고지일자	
당초고지금액	취소(변경)금액	비고
	당초고지금액	당초 고지일자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	처리기간 14 일		
신 청 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	
<u> </u>	주 소		
영 업 소	업 소 명 (시 설 명)		
о н т	소 재 지		
	고지서번호	통지일자	
과태료부과 처분내역	처 분 내 역	과태료 금액	
71411	처 분 사 유		
	과처분에 대한 복사유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제7조 2항 관련)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과 태 료 부 과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처 분 내 역	부과기관	이의제기 일자

- 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 2.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1부.

[별지 제8호서식]

<u>과 태 료 수 납 부(제11</u>조 관련)

일려	통지서	처 분	납부			납부의무자		체납	내역		제기	
번호	번 호	처 분 통지일	기한	급액	성명	주소	납부일	독촉일	납부일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	비고

붙임 2)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의료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 대료를 부과한다.

-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 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 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 2. 당사자에 대한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 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
-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한다.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 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 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

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